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직업교육법안 검 토 보 고

〈직업교육체계 구축 및 기본법 마련〉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34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구성체계	3
1) 제정안의 발의배경 검토	3
2) 제정안의 구성체계	6
3) 총괄 의견	10
(1) 제정안의 필요성	10
(2) 제정안 심사 시 고려사항	12
(3) 관계기관 의견	14
2. 주요 조문별 검토	15
1)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조항(안 제1조~제3조)	15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21
3)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23
4) 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지역직업교육협의회(안 제8조 및 제9조) ...	28
5) 단계별 교육과정(안 제10조~제12조)	33

6) 직업교육과정의 연계, 유연한 운영(안 제13조 및 제14조)	36
7) 전문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안 제15조)	39
8) 국가직업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안 제16조)	41
9) 소외계층 특별지원(안 제17조 및 제18조)	43
10) 전문직업교원의 임용·연수 및 안전확보(안 제19조 및 제21조)	44
11) 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및 지원(안 제20조 및 제22조) ...	49
12) 부칙	50
※ 참고자료1	51
참고자료2	5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2.
3. 회부연월일 : 2025.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에 대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여러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직업교육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초·중등, 고등, 평생에 이르는 단계별 직업교육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않음.

한편 저출산·고령화, 디지털·AI 전환,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여러 법률에 분산된 직업교육 규정을 정비하고, 단계별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직업교육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추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 및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모든 국민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복 추구 및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직업교육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직업교육·직업교육기관·직업교육교원 및 현장실습의 개념을 정의하며,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다. 직업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5년 단위의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분석, 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직업교육 단계를 초·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과정 간 연계 및 유연한 운영, 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직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의 지정·운영, 현장실습 지원, 소외계층 및 중년·장년층에 대한 지원, 직업교육교원의 임용 및 연수, 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의 안전 확보,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구성체계

1) 제정안의 발의배경 검토

□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는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과 과정 중심의 교육 체계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현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직업교육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교육 체계는 학교 교육과 직업교육, 재직자 교육, 성인 학습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산업 수요와 교육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으며,

평균 수명 연장과 고용 환경 변화로 인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역량 개발과 직업 전환이 보편화되면서, 직업교육은 초기 진로 형성 단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전환교육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 따라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현재 직업교육에 관한 규정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

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에서 존재하고 있으나, 각각의 법안은 직업교육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작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적 지위를 지닌 「직업교육법」을 제정하여, 분산된 직업교육 규정을 정비하고, 단계별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직업 역량 계발을 지원하고,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법률들의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직업교육에 관한 통합적인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과 관련한 법안들은 주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소관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데, 앞서 밝힌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직업훈련”은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업교육”은 주로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기존 직업교육 관련 법률 비교>

구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교육 훈련범위	직업교육 ○(일부) 직업훈련 ×	직업교육 ○ 직업훈련 ○	직업교육 × 직업훈련 ○
적용기관	교육기관 ○ 훈련기관 ×	교육기관 ○ 훈련기관 ○	교육기관 × 훈련기관 ○
지원대상	중등단계 × 고등단계 ○ 평생단계 ×	중등단계 ○ 고등단계 × 평생단계 ×	중등단계 × 고등단계 ○ 평생단계 ○
소관부처 및 부서	교육부 (산학협력지원과)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또한, 교육과정 단계별 직업교육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현행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에 관한 법률은 각각 직업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현장실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 단계의 직업교육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도 현장실습, 교육훈련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할 뿐, 단계별 직업교육 과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 학습자들의 나이 및 학업수준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직업교육 제공이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제4장 본칙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법안」(의안번호 2205750)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동 제정안과 조문 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김문수 의원안		정성국 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2조	정의
제3조	정의	제3조	직업교육 이념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직업교육 추진체계	제2장	직업교육 추진체계
제6조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직업교육 실시 현황의 조사·분석	제7조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사항
제8조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장	직업교육 진흥
제9조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	국가직업교육센터의 운영
제3장	직업교육 운영	제9조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분석
제10조	초·중등단계 직업교육과정	제10조	현장실습 지원 등
제11조	고등단계 직업교육과정	제11조	직업교육교원
제12조	평생단계 직업교육과정	제12조	산학연 협력
제13조	직업교육과정의 연계 운영	제13조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
제14조	직업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	제14조	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제15조	전문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	제4장	단계별 직업교육
제4장	직업교육 진흥	제1절	초·중등단계의 직업교육

제16조	국가직업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제15조	교육과정의 종류
제17조	현장실습 지원	제16조	교육과정 운영 등
제18조	소외계층 및 중년·장년층의 특별지원	제17조	직업교육교원 및 학생의 안전 확보
제19조	직업교육교원의 임용 및 연수	제2절	고등단계의 직업교육
제20조	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제18조	교육과정
제21조	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의 안전 확보	제19조	평가 및 인증
제22조	직업교육기관 지원	제20조	단기전문직업교육과정
		제3절	평생단계의 직업교육
		제21조	적용대상
		제22조	교육과정
		제23조	평가 및 인증
		제5장	보칙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지도 및 지원
부칙			

□ 제정안 제1장은 총칙으로 “직업교육”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 실시,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

□ 제2장은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지역별 ‘지역직업교육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제3장은 초·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의 단계별 직업교육과정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계와 학습
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직업교
육과정을 평가 및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제4장은 직업교육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직업교육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현장실습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및 직업교육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

구 분	세부 조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직업교육 추진체계	제6조(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직업교육 실시 현황의 조사·분석), 제8조(국가직업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지역직업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3장 직업교육 운영	제10조(초·중등단계 직업교육과정), 제11조(고등단계 직업교육과정), 제12조(평생단계 직업교육과정), 제13조(직업교육과정의 연계 운영) 제14조(직업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 제15조(전문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
제4장 직업교육 진흥	제16조(국가직업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제17조(현장실습 지원), 제18조(소외계층 및 중년·장년층의 특별지원) 제19조(직업교육교원의 임용 및 연수), 제20조(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제21조(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의 안전 확보), 제22조(직업교육기관 지원)
부 칙	시행일

3) 총괄 의견

(1) 제정안의 필요성

□ 제정안은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법 마련을 통해 법령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 전 주기적 직업교육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직업교육 관련 추진체계 및 전문기관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지원하여 단계별 학습자에 맞춘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 생애주기적인 평생교육 측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교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어 직업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게 됨. 직업교육에 대한 사항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어 단계별 직업교육 과정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이스터고, 직업계고 등 중등교육 과정에서 시행되었던 교육이 동일하게 고등교육 과정인 전문대학에서 시행되는 등 교육과정의 중복으로 비효율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직업교육법」의 제정으로 현행 직업교육 관련 법률들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분야별 교육에 관한 독립적 법률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교육 및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교육기본법 분야별 법 제정 현황>

구분	법률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제19조(영재교육)	「영재교육법」
「교육기본법」 제20조(유아교육)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제21조(직업교육)	제정미비
「교육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교육)	「과학·수학·정보 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제정미비
「교육기본법」 제22조의3(진로교육)	「진로교육법」
「교육기본법」 제22조의4(학교체육)	「학교체육진흥법」

또한, 제정안은 단계별 교육과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초·중등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한 진로탐색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고등단계에서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재직자·성인학습자 등의 재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 등을 중점으로 직업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학습자의 연령, 학습 동기 및 교육 수요,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각 단계별 학습자의 수요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직업교육 관련 추진체계 및 전문기관을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음.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직업교육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6조)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직업교육에 관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국가 직업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직업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직업교육 정책체계와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음.

(2) 제정안 심사 시 고려사항

□ 다만, 제정안을 심사하는 경우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3조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직업교육기관에 모든 대학이 포함되거나 직업교육교원에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교원이 모두 포함되어 이 법의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으므로 범위를 한정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9조는 산업체 경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직업교육 교원으로 우대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직업교육교원이 초·중·고등학교 교사 혹은 대학교원인 점을 비추어 보아 우대임용 시

기존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임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에서 ‘현장실습’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타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여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타 법률(「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의 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중복 규정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넷째, 국가직업교육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기는 하나,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기존 위원회(국가산학협력위원회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관계기관 의견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여러 법률에 분산된 직업교육 규정을 정비하고, 단계별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직업교육 기본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제정안이 기존 직업교육 관련 규정의 단순 통합·재구성을 넘어 실질적인 직업교육 강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 직업교육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중등 직업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사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초·중등단계의 교육과정에 관한 기준과 내용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시¹⁾하고 있으므로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고용노동부는 직업교육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개별 법령을 개정하여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1) 참고자료1

2.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조항(안 제1조 ~ 제3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직업교육법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직업교육이 생애 전 주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
- 안 제3조는 “직업교육”, “직업교육기관”, “직업교육교원” 및 “현장실습” 등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 및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교육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② 직업교육은 산업 및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업 현장과 협력을 통하여 일·학습·삶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직업교육을 이수한 자는 그 자격, 학력 및 역량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누구든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직업 탐색부터 직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소양과 직무수행역량(지식·기술·태도 및 그 밖에 관련 역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기초직업교육: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직업 선택과 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기본 수준의 직업교육

나. 전문직업교육: 다양한 산업 및 직무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역량을 심화하여, 취업, 창업 및 직무 수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전문 수준의 직업교육

2. “직업교육기관”이란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직업계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나. 고등직업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평생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직업교육교원”이란 직업교육기관에서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및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기관과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진로·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과정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 (목적) 안 제1조에서는 직업교육을 통해 국민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도록 하여 국민의 행복 추구 및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기본이념) 안 제2조는 직업교육에 관한 통합적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정의) 안 제3조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직업교육”, “직업교육기관”, “직업교육교원”, “현장실습”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직업교육 관련 법률의 용어 정의>

구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교육법안(제정안)
직업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고용부장관 승인)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고용부장관 승인) - 기능대학: 교육훈련기관	- 직업교육기관: - 직업계고등학교 - 고등직업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평생직업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교원	- 직업교육훈련교원: - 중등학교 내 전문교과 담당 - 훈련기관의 훈련교사	- 교원: - 기능대학의 교원(산학겸임, 초빙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기관의 훈련교사	- 교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해당 규정 없음)	직업교육기관과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진로·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과정

우선,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직업교육의 교육과정을 초·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교육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3조 제1호 각목과 같이 초·중등단계에 포함될 수 있는 ‘기초직업교육’과 고등 및 평생교육단계에 포함될 수 있는 ‘전문직업교육’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이 단계별 교육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가 교육과정별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함인 바, 이를 고려할 때 직업교육에 대한 정의를 ‘기본’ 수준과 ‘전문’ 수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직업교육기관’은 안 제3조 제2호 나목²⁾에서 고등직업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이때 ‘고등직업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는데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 대학과 전문대학 등을 지칭함.

- 참고로, 안제3조제2호나목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KAIST³⁾, UNIST⁴⁾

2)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등과 같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의미함.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등 「고등교육법」 상 모든 대학이 직업교육기관에 해당하게 되는데, 직업교육이 ‘전문대학’에 한정되어 실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모든 대학을 직업교육기관으로 정의하게 되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든 대학이 제정안에 따른 직업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됨.

직업교육은 일반적인 학문 중심의 교육과 달리, 산업 현장과의 연계,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 별도의 교육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재도 주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상 모든 대학을 일률적으로 직업교육기관으로 정의하는 것은 직업교육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법안의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법안」 제2조제2호⁵⁾ 나목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전문직업교육과정 평가 및 인증을 받은 학교로 정의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하게, ‘직업교육교원’ 역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정의함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원

5) 「직업교육법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75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업교육기관”이란 제1호나목의 전문직업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 및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제1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및 대학교원을 직업교육교원으로 보게 되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은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⁶⁾에서 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며, 타 법령 등에서 ‘현장실습’이라는 용어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 「직업교육법안」이 직업교육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타 법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실습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여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장실습 정의 규정 비교>

김문수 의원안 제3조제4호	정성국 의원안 제2조제4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
“ <u>현장실습</u> ”이란 직업교육기관과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u>진로·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u> 을 습득할 수 있도록 <u>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과정</u> 을 말한다.	“ <u>현장실습</u> ”이란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u>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u> 를 습득할 수 있도록 <u>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수업</u> 을 말한다.	“ <u>현장실습</u> ”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u>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u> 를 습득할 수 있도록 <u>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u> 을 말한다.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직업교육의 실시 및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직업교육 실시 기관 및 사업장의 직업교육 관련 정책 적극 참여 권장, 산업체와의 협력 기반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

제 정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직업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실시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시설 및 사업장이 직업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체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직업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직업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직업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규정은 다른 직업교육 관련 법령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각각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분절적으로 규정

되고 있어, 제정안과 같이 직업교육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의 책무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직업교육 관련 법률 지원 관련 규정>

제명	지원 관련 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을 촉진하고 일학습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5조는 직업교육과 관련한 사항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률간의 충돌 등 중복 규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짐.

3)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6조는 교육부장관이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국가직업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한 의견수렴, 자료제출 요구,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직업교육의 실시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6조(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라 국가직업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4. 직업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방향 5. 직업교육기관 간 및 산업체와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협력 6. 직업교육기관의 국제협력 7. 직업교육 관련 제도 및 규정의 개선 8. 학습자의 학습권 및 안전보장

9. 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

10. 그 밖에 직업교육에 필요한 사항

-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장, 직업교육 관련 협의체, 산업계·노동계 및 학습자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관련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직업교육 실시 현황의 조사·분석)

-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직업교육의 실시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장 등, 직업교육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직업교육 실시 현황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정안은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직업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운영에 관해 정하기 위해 기본계획(안 제6조)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직업교육 관련 법률들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정안에 따라 수립될 기본계획은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획 내용이 중복될 소지가 있음.

<직업교육 관련 기본계획>

제명	지원 관련 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직업교육법안(제정안)	제6조(직업교육기본계획)

<직업교육 관련 기본계획의 내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교육법안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3의2. <u>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u> 4. <u>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u> 5. <u>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u> 6. <u>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 훈련자료의 개발·보급</u> 7.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u>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u> 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1. <u>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u> 2. 직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국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 <u>직업교육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u> 2.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4. <u>직업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방향</u> 5. <u>직업교육기관 간 및 산업체와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협력</u> 6. <u>직업교육기관의 국제협력</u> 7. 직업교육 관련 제도 및 규정의 개선 8. <u>학습자의 학습권 및 안전보장</u> 9. <u>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u> 10. 그 밖에 직업교육에 필요한 사항

	8.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9.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상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은 1999년 제1차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이후 별도로 수립된 바 없으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상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직업훈련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직업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며,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제도 혹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제1차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이후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경우⁷⁾ 새로 수립된 계획 등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동일한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4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기본계획이 1999년 이후 수립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본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용에 대하여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직업교육 실시 현황의 조사·분석) 안 제7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교육의 실시 현황을 조사·분석하도록 하여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업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중장기 직업교육 정책 수립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중등 직업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제3항제4호 ‘교육과정 개발’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고시를 통하여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및 전문교과 필수 이수 학점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전문교과의 구체적인 종류를 17개 교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지역직업교육협의회(안 제8조 및 제9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8조는 직업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지역 단위의 직업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시·도 단위의 지역직업교육협의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직업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직업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 정책의 수립·조정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업교육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산업계·학계·직업교육기관의 관계자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직업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도지사는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 이수자의 취업·창업 지원 및 일자리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재직자의 직업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 직업교육 정책의 실행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국가직업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정안은 심의·의결 기구로서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러 법률들에 산재되어 있는 직업교육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기본계획에 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임.

□ 신규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직업교육 분야에 심도있는 정책 마련 등 심의 과정을 보장할 수는 있으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⁸⁾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또는 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로,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법안」(의안번호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5750) 제7조는 심의·의결 기구로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다른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산학협력위원회는 산학협력 등 주요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⁹⁾하고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정책 현장의 지원 및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나, 행정안전부는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교육부 산하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산업교육은 직업교육의 하위영역이라는 점에서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활용하기 보다는 직업교육에 관한 위원회를 별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는 지역단위의 직업교육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지역직업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9)

<국가산학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2	2	1	1	0	0	0
2023년	2	1	0	1	1	1	0
2024년	2	2	1	1	0	0	0
2025년	1	1	0	1	0	0	0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중심으로 대학지원에 대한 권한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역전략 산업 중심의 대학 혁신 및 지역 인재 양성 지원체계가 확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시·도 단위의 지역에 적합한 직업교육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 다만, 안 제9조제4항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9조제3항제5호10)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방안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9조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를 방지하고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 등을 두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제정안에 따른 ‘지역 직업교육협의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5.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 직업교육 정책의 실행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지역직업교육협의회 및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심의사항>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직업교육법안」 제9조)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9조)
•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정책 및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직업교육 이수자의 취업·창업 지원 및 일자리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 재직자의 직업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 직업교육 정책의 실행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계획의 수립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한편, 안 제9조는 지역직업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은 고등단계 및 평생교육단계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주체를 시·도 교육감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단계별 교육과정(안 제10조 ~ 제12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는 단계별 직업교육과정을 규정하면서, 각각 초·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의 직업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조(초·중등단계 직업교육과정)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학습자의 적성, 흥미 및 진로를 고려하여 기초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직업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직업계고등학교는 현장실무에 기반한 전문직업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도제교육 등 산업체 공동 교육과정 2. 자격 취득 교육과정 3. 그 밖에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제11조(고등단계 직업교육과정) ①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재직자·성인학습자의 재취업 및 직무역량 향상 수요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2.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의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직업교육과정 3. 1년 이내의 단기 전문직업교육과정 4. 그 밖에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장이 직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이수 결과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평생단계 직업교육과정) ① 평생직업교육기관은 학습자의 생애 주기와 직업 전환 수요를 반영하여 「평생교

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직업능력 향상교육
 2.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3.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장이 직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이수 결과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단계별 직업교육과정)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단계별 직업교육과정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단계를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직업교육 관련 법률에서 직업교육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어 직업교육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는 동 제정안에서 단계별 교육과정을 규정하여 학습자의 수요, 연령,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볼 것임.

□ 특히, 안 제10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중등단계 교육과정을 규율하는 안 제10조제2항은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 제도 하에서 직업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의 활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직업교육과정이 현행 제도인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한편, 초·중등단계에서는 안 제11조제2항 및 안 제12조제2항과 같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앞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초·중등 직업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¹¹⁾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재량을 존중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11)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직업교육과정의 연계, 유연한 운영(안 제13조 및 제14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 13조는 직업교육기관 간 교육과정 연계·협력 및 인력 등 공동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면서 교육과정 간, 교육기관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직업교육과정이 수업연한, 학기 등에 있어 유연하게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3조(직업교육과정의 연계 운영) ① 직업교육기관은 직업교육과정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력·시설·설비 및 직업교육 관련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기관은 산업계 및 다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직업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과정의 이수 결과는 관련 법률에 따른 학점, 수료증 또는 자격증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과정의 연계, 공동 개발 및 운영, 이수 결과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업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 ①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평생직업교육기관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과정을 수업 연한, 학기, 수업일수, 수업의 방법, 학점의 인정 등에 있어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에서의 실무경험이나 정규 학위과정 외의 연구·학습경험이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과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가 진학, 학위과정, 취업, 자격취득 등과 연계되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방식과 평가·인정의 기준·절차 및 그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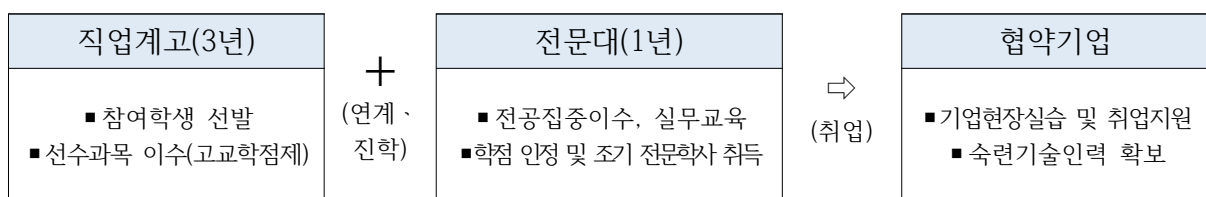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 (직업교육과정의 연계 운영) 안 제13조는 분절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직업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직업계고에서 이미 진행한 교육과정을 전문대학에서 중복하여 진행하는 등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직업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하며, 현행 직업계고와 대학-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교육부에 따르면, 직업계고-전문대-기업이 산업수요기반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며, 학점 연계 운영 등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학생의 산업체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사 과정을 단축하는 학위취득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업계고-기업-대학 연계를 통한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사업 등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직업교육기관의 연계 운영(안)>



자료: 교육부

□ (직업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 안 제14조는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평생직업교육기관이 학습자의 특성과 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등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현장실습, 산업체 연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구체적으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중·장년층의 직무 전환 수요를 반영한 단기·비학위 과정 도입¹²⁾,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운영 등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산업체 실무경험이나 정규 과정 외 학습·연구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RPL)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위·취업·자격과정과의 연계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2) 국정과제로서, 교육과정·학사제도 유연화 및 학위과정 연계 등을 포함하는 개방형 평생직업교육 모델 마련

7) 전문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안 제15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5조는 교육부장관이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문직업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에 대하여 우선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직업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5조(전문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문직업교육과정을 다른 전문직업교육과정보다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 및 인증의 운영체제 마련, 기준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16조에 따른 국가직업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가 및 인증의 기준, 절차,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전문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 현행 「평생교육법」 제28조의 2¹³⁾는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 평가·인

13) 「평생교육법」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 평생직업교육기관이 평생교육과정 인증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음.

- 전문직업교육은 재취업자 또는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일부로 볼 수는 있으나, 평생교육은 시민 교육·교양교육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이를 직업교육으로 한정하여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와 안 제15조에 따른 전문직업교육과정 인증은 그 대상이 상이하여 사실상 별개의 인증제도로 보이는 바, 제도 간 중복 또는 충돌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5조제2항은 전문직업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에 대하여 다른 전문직업교육과정에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문직업교육기관이 전문직업교육과정 평가·인증 받을 유인이 커지고, 학습자들은 인증된 교육과정을 통해 질높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시행, 전문기관에의 위탁,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가직업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안 제16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6조는 직업교육의 체계적인 운영 및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6조(국가직업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정책 지원을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분석 2. 직업교육 정책 및 제도의 운영 성과 평가와 효과성 연구 3. 산업 수요 조사·분석 및 직업교육 정책 개발 지원 4. 직업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 5. 직업교육교원의 연수·재교육 지원 6.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지원 및 성과 관리 7. 직업교육과정의 평가·인증 기준 개발 및 운영 관리 8. 직업교육 이수자의 진로, 취업 및 창업 지원 9. 직업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10. 직업교육 관련 통계 수집·관리 및 성과 분석 11.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업교육 관련 연구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국가직업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직업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및 지원 등을 위해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업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국가직업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을 두어 전 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직업교육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현재 ‘국가직업교육센터’라는 명칭의 기관은 별도로 설치된 바가 없는데, 안 제16조는 국가직업교육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려는 것이 아닌 직업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명칭을 ‘국가직업교육센터’라 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관련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교육부는 이미 설치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을 전문기관(국가직업교육센터)으로 지정하여 직업교육의 정책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함.

9) 소외계층 특별지원 (안 제17조 및 제18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8조는 직업교육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며, 중·장년 및 고령층의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8조(소외계층 및 중년·장년층의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직업교육 소외계층이 차별 없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기관이 중년·장년층 및 고령층의 직업 전환 및 재취업 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소외계층 및 중년·장년층의 특별지원) 안 제18조는 직업교육의 기회균등과 취약계층의 직업역량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성인·중장년층의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려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제4항¹⁴⁾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면서, 고령자·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역량 강화를 명시화하고 있음.

1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고령자·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 11. (생략)

10) 전문직업교원의 임용·연수 및 안전확보(안 제19조 및 제21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9조는 직업교육기관이 산업체 경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직업교육교원으로 우대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21조는 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9조(직업교육교원의 임용 및 연수) ① 직업교육기관은 현장 직무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 경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직업교육교원으로 우대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수 등 직업교육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의 안전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기관은 현장실습 및 교내 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습 과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기관에 시설, 장비 및 보호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직업교육교원의 임용 및 연수) 직업교육교원은 안 제3조 정의규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교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로 정의하고 있음.

직업교육교원은 직업교육의 특성상 일정한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지니고 있는 인력으로서, 전문성이 필수적인 요건이나, 직업교육교원을 정의 규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 교원 등 기존 교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경우, 직업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우수 교원을 채용함에 제도적인 제약이 발생하므로 해당 규정을 통해 산업체 경력 등을 가진 자를 우대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안 제3조에 따르면 직업교육기관을 직업계고 및 대학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대학이 직업교육교원을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채용과정에서 기존 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는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두고 있으며,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선언적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3조는 기능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자격을 대통령령¹⁵⁾으로 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직업교육교원을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채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동 규정으로 인하여 자격이 부족한 자가 우대 채용되는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관련 분야의 재직기간 및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요건을 정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1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3조(교원 등의 종별·자격 및 정원) ①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필요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조교 및 그 밖의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상 교원 자격요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4]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제42조제1호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교 수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 교 수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 교 수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비 고

1. 경력연수(經歷年數)는 명장(名匠)·기능전승자 선정일, 자격취득일 및 국제기능 올림픽 입상일 이후의 근무연수를 말한다.
2. 산업체 현장 근무경력에는 자영업 영위기간을 포함한다.

□ (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의 안전 확보) 안 제21조는 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의 안전 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해당 직무에 대한 숙련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습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큼. 특히, 현장실습 과정이 교과학습 과정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사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동 규정의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및 산업재해, 권익침해건수 현황>

연도	현장실습 참여학생(명)	산업재해건수(건)	권익침해건수(건)
2022	19,027	11	22
2023	16,353	13	15
2024	16,542	14	14

자료: 교육부

11) 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및 지원(안 제20조 및 제22조)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제20조는 직업교육기관이 지역 기업과의 협업, 일자리 수요에 대응, 지역 특화 산업 인재 양성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2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임.

제 정 안
제20조(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① 직업교육기관은 지역 산업과 지역 사회의 직업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기관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직업교육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의 발전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 및 지역 소멸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직업교육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둠을 통해 제정안이 직업교육의 기본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지원 근거를 체계화하여 직업교육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12) 부칙

가. 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시행일을 이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제정안에서 대통령령 및 조례(안 제9조)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이 존재하므로 하위법령 등을 조정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일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93

<참고자료 1 :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2026-1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전문교과 세부내역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p.30 ~ 34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1) 보통 교과

(가) 보통 교과의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나)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2) 전문 교과

(가) 전문 교과의 교과(군)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경영·금융, 보건·복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미용, 관광·레저, 식품·조리, 건축·토목,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안전·소방, 농림·축산, 수산·해운, 융복합·지식 재산 과목으로 한다.

(나) 전문 교과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표 4〉

	교과(군)	공동 과목	필수 이수 학점	자유 이수 학점	
보통 교과	국어	공동국어1, 공동국어2	24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공동수학1, 공동수학2			
	영어	공동영어1, 공동영어2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6		12
		통합사회1, 통합사회2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체육		8		
	예술		6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교양		8		
	소계		64	30	
전문 교과	17개 교과(군)		80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 학점			192		

-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동 과목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1, 2의 기본 학점은 3학점이며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④ 필수 이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이다.
- ⑤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필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⑥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수는 최소 이수 학점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⑦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2 : 교원 관련 현행 법령 규정>

<산학협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양성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체 현장연수 등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채용할 때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별표 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산학겸임교원은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초빙교원은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시간강사는 관련 분야 산업체 근무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4]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제42조제1호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교 수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 교 수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 교 수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비 고

1. 경력연수(經歴年數)는 명장(名匠)·기능전승자 선정일, 자격취득일 및 국제기능 올림픽 입상일 이후의 근무연수를 말한다.
2. 산업체 현장 근무경력에는 자영업 영위기간을 포함한다.